

멀티뱅크서비스 이용 계약서

(주)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용기관 (이하 "'고객'"이라 한다)은 멀티뱅크 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멀티뱅크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장 기본 사항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멀티뱅크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란 "고객"이 보유한 당/타행의 계좌로부터의 입금, 계좌거래내역의 제공 등 제 2 조에 정한 업무처리를 대행하는 서비스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2. "출금계좌"란 "고객"이 당/타행에 보유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특정 계좌에 자금을 집중하기 위하여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한 일정에 따라 출금하는 계좌를 말한다.
3. "입금모계좌"란 "고객"이 당행에 보유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출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집중되는 계좌를 말한다.
4. "수수료인출계좌"란 "고객"이 당행에 보유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본 서비스를 이용의 대가로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매월 자동으로 인출되는 계좌를 말하며, 거래통화가 원화인 계좌에 한한다.
5. "B2B"란 "고객"이 당/타행에서 상거래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수금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업 간 지급결제 방식(구매카드, 전자어음, 구매대, 외담대 등) 중 전자방식에 의한 것으로 당/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6. "제휴가상계좌"란 "고객"의 가상계좌를 통한 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행이 제휴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고객" 앞 분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2 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종류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의 종류	업무내용
1) 입금대행 서비스	"고객" 명의의 "출금계좌" 잔액을 "고객"이 요청한 시간 및 주기에 따라 "입금모계좌"로 집금을 대행 해주는 서비스

2) 계좌 거래내역 제공 서비스	"고객" 명의의 "출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또는 "입금모계좌"의 입금 거래내역을 "고객"과 별도로 정한 방식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
3) 당/타행 B2B 거래내역 제공 서비스	"고객" 명의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거래하는 "B2B"의 거래내역을 "고객"과 별도로 정한 방식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
4)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	"고객" 앞 분배된 "제휴가상계좌"의 입금내역을 "고객"과 별도로 정한 방식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 3 조 (서비스의 신청)

- ① "고객"은 본 서비스의 신청시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출금계좌, 입금모계좌 및 수수료인출계좌등의 세부 사항을 "멀티뱅크서비스 이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집금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위 1 항의 세부 사항 중 입금모계좌와 수수료인출계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며, 계좌 거래내역 제공 서비스, 당/타행 B2B 거래내역 제공 서비스,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위 1 항의 세부 사항 중 수수료인출계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서비스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변경일자를 정하여 변경 7 일 전에 "은행" 앞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터넷 뱅킹 기반의 집금대행 서비스

제 4 조 (업무처리)

- ① "은행"은 인터넷뱅킹 기반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당행에 존재하는 경우 내부전산망을 사용하여 집금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출금은행의 출금계좌는 대상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 ② "고객"은 "은행"이 집금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전자금융거래(이하 "인터넷뱅킹"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때, 집금의 대상이 되는 출금계좌와 입금모계좌는 해당 인터넷뱅킹 상의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로서 각각 지정되어야 한다.
- ③ 단, 제 2 항의 출금계좌 및 입금모계좌 외에 추가로 출금계좌와 입금계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정한 계좌를 서면으로 "은행" 앞 통보한다.

- ④ 해당 인터넷뱅킹 거래 계약상 제 2 항의 입금모계좌 지정이 해지(취소)되었을 경우에 "은행"은 집금대행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앞 입금모계좌를 즉시 재지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고객"은 집금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 정보의 전달을 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멀티뱅크서비스 이용신청서-인터넷기반 집금대행 서비스용" (이하 "신청서")상 각 출금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 정보(이용자 ID, 접속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와 출금계좌 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기타 필요정보를 기재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 거래를 위한 장치(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는 "은행"에 실물을 전달하여야 한다. "고객"이 이를 모두 "은행"에 전달한 이후 "은행"은 "고객"과 협의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고객"은 이체를 위한 장치(보안카드, 일회용 비밀번호카드 등) 등의 중요 실물을 "은행"에 전달 시 별도의 "중요증서 인수(도)증"을 작성한다.
- ⑦ "은행"은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변경이 불가한 정보를 제외하고) 인터넷 뱅킹 접속 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이 "은행"에 제공한 인터넷뱅킹 접속 정보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7 일전에 "은행" 앞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본 서비스의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⑧ "은행"이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타행의 인터넷뱅킹 운영 정책에 따라 인터넷뱅킹 접속 정보를 초기화 및 변경 또는 통장정리 등 기타 "고객"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경우 "고객"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 ⑨ 집금대행 서비스의 집금시간의 지정은 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가능 시간 중 은행의 영업시간 내에서 지정 가능하며, 출금계좌별 출금주기, 출금일 및 출금금액 등 세부 사항은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 ⑩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상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 ⑪ "은행"은 타행계좌 거래내역과 입금모계좌 입금거래내역 보고서를 집금처리일 익영업일까지 인터넷뱅킹 시스템 또는 기타 통신수단을 통해서 "고객" 앞 제공하며, "고객"은 동 처리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집금 대행한 내역을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보관한다.
- ⑫ "고객"은 집금대행과 관련하여 "은행" 앞 제공한 출금은행의 인터넷뱅킹 ID 를 은행이 집금대행 서비스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하는데 동의하며, 동 인터넷뱅킹 ID 를 이용하여 이체거래 등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순 조회를 제외한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인터넷뱅킹 정보거래 전체를 "은행"에 위임하여야 한다.

- ⑬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가 “은행”이 아닌 제 3 자에 의하여 접속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은행”이 그러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사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은행”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⑭ “고객”이 요구한 타행 출금계좌 중 CMS 코드를 이용한 집금 계좌(핀뱅킹 계좌 포함) 등 타행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지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객”은 동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⑮ 집금의 실행은 당/타행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고객”은 대월 약정이 되어 있는 계좌 또는 서비스 개시 이후 대월한도를 신규 또는 변경/삭제한 출금 계좌에 대하여 대월한도까지 출금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대월약정 한도금액 항목에 한도 금액을 기재하여 대월한도까지 모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조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제 규정 및 거래약관과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전자금융약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신청한 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통장 미정리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3. 타행의 출금 대상계좌가 없거나, 입금 지정계좌가 제 3 조에서 기술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경우
4. 출금계좌가 거래중지좌 편입,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우
5.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6. “고객”이 소정의 양식에 기술하여 “은행” 앞 제공한 타 출금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와 실제 타행에 신청한 인터넷뱅킹 정보간의 차이로 “은행”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7. 출금계좌가 잔액부족, 계좌해지, 미사용 계좌, 이용자 ID 해지, 통장미정리, 장기미집금으로 인한 이체제한,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 7 호의 경우, 3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장기 미집금 상태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은행” 앞 별도 해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대상 출금계좌에 대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 3 장 펌뱅크 기반의 집금대행 서비스

제 6 조 (업무처리)

- ① "은행"은 펌뱅크 기반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당행에 존재하는 경우 내부전산망을 사용하여 집금할 수 있으며, 펌뱅크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출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고객"은 "은행"이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과 펌뱅크서비스(이하 "펌뱅크"이라 한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객"이 출금은행과 펌뱅크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 받은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은행"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를 본 서비스 용도가 아닌 다른 "고객"의 자체적인 업무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 체결시 타행과 발생하는 수수료 정산은 월 단위로 하도록 한다.
- ③ "은행"이 펌뱅크 기반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은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VAN 사 제출용 펌뱅크 이용 신청서"를 "은행"이 선정한 VAN 사에 제출해야 하며, "고객"은 "은행" 앞 VAN 사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
- ④ "고객"은 "은행"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체결과 별도로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펌뱅크 기반 집금대행 서비스용"(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각 출금은행의 업체코드, 식별코드, 출금계좌 등 필요정보를 작성, 신청서를 "은행" 앞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객"이 위 신청서에 지정한 출금 계좌별 필요정보 등을 모두 "은행"에 전달한 후, "은행"과 "고객"이 합의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⑤ "신청서" 제출시, "고객"이 필요정보로 제공한 출금계좌에 대월약정이 되어 있더라도 은행은 요청된 일정 및 금액에 따라 "본 서비스"를 수행한다.
- ⑥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 시간에 "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은행"의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다(서비스 이용 시간이 조정된 경우 제 7 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지정한 개별 출금은행의 전산 사정상 전송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원화집금: 은행영업일 08:00 ~ 22:00
 - 외화집금: 은행영업일 08:00 ~ 15:00
 - 타행거래내역: 은행영업일 08:00 ~ 22:00
- ⑦ "은행"은 "고객"이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한 출금계좌별 출금주기, 출금일 및 출금금액 등에 맞게 "본 서비스"를 처리한다.

- ⑧ "고객"이 제 4 항 소정의 양식에 신청한 출금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 ⑨ "고객"은 집금처리된 내역 및 결과를 인터넷뱅킹 시스템 및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은 타행계좌 거래내역과 모계좌 입금내역 보고서를 업무처리를 한 당일 또는 익영업일에 "고객"에게 인터넷뱅킹 시스템, 기타 통신수단 등을 통해서 제공한다. "은행"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집금 대행한 내역을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보관한다.
- ⑩ "고객"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 앞 제공한 업체코드 및 식별코드를 이용하여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직접 할 수 없으며, 본 서비스 관련 거래는 "은행"에 의하여 처리됨에 동의하며, 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모든 펌뱅킹 정보거래 전체를 "은행"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⑪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가 "은행"이 아닌 제 3 자에 의하여 접속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은행"이 그러한 권한 없는 접속 또는 사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⑫ "고객"이 요구한 타행 출금계좌 중 CMS 코드를 이용한 집금 계좌(펌뱅킹 계좌 포함) 등 타행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지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고객"은 동 계좌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⑬ 집금의 실행은 당/타행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고객"은 대월 약정이 되어 있는 계좌 또는 서비스 개시 이후 대월한도를 신규 또는 변경/삭제한 출금 계좌에 대하여 대월한도까지 출금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대월약정 한도금액 항목에 한도 금액을 기재하여 대월 한도까지 모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제 규정 및 거래약관과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전자금융약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과 펌뱅킹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외화집금처리 업무의 경우, "고객"이 신청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의한 지급허가 등을 받지 못한 거래이거나 동법 및 관련 규정등에 의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전산 장애등의 이유로 출금계좌에서의 출금 및 거래내역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타행의 출금 대상계좌가 없거나, 입금 지정계좌가 제 3 조에서 기술한 입금모계좌와 상이한 경우
5. 출금 대상계좌가 거래중지좌 편입,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법적제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경우

6. 출금 대상계좌의 예금잔액이 의뢰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7. 출금 대상계좌 또는 입금모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8. 출금 대상계좌가 잔액부족, 계좌해지, 미사용 계좌, 통장미정리,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 8 호의 경우, 3 개월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장기 미집금 상태임과 이로 인해 집금처리가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으며, 6 개월 간 집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은행"에게 별도 해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대상 출금계좌에 대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 4 장 B2B 거래내역 제공 서비스

제 8 조 (업무처리)

- ① "은행"은 인터넷뱅킹 기반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뱅킹 기반이 제공되지 않는 은행의 B2B 거래내역은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고객"은 "은행"이 B2B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정한 B2B 거래를 관리하는 은행(이하 "B2B 거래은행"이라 한다)의 전자금융거래(이하 "인터넷뱅킹"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거래내역을 제공받을 B2B 거래에 대하여 거래은행명, बैं킹구분, 서비스구분(구매/판매), 전자결제수단 (전자방식외담대, 구매대 등), 전자결제수단상세내역 등의 상세 내역을 "멀티뱅크서비스 이용신청서- B2B/제휴가상계좌 거래내역제공 서비스용" (이하 "신청서")상 기재하여 전달하기로 한다.
- ④ "고객"은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B2B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서"상 각 "B2B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접속 정보(이용자 ID, 접속비밀번호)와 기타 필요정보를 기재하여 "은행" 앞 제출하되 B2B 거래내역의 조회가 가능한 이용자 ID 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갱신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갱신된 인터넷뱅킹 접속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방식 기반의 집금대행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으로 본 계약서 제 6 조 5 호에 따라 이미 인터넷뱅킹 접속정보 및 기타 필요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 제공된 이용자 ID 를 본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동일한 이용자 ID 를 "신청서"상 기재할 수 있으나, 중복 사용할 이용자 ID 로 B2B 거래내역의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⑥ "고객"이 제 4 항 및 제 5 항의 정보를 모두 "은행"에 전달한 이후 "은행"은 "고객"과 협의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⑦ "은행"은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인터넷 뱅킹 접속 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이 "은행"에 제공한 인터넷뱅킹 접속 정보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7 일 전에 은행 앞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본 서비스의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⑧ "은행"이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타행의 인터넷뱅킹 운영 정책에 따라 인터넷뱅킹 접속 정보의 초기화 및 변경 등 "고객"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 ⑨ B2B 거래내역 제공 서비스의 거래내역 조회 시간의 지정은 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가능 시간 중 "은행"의 영업시간 내에서 지정 가능하며, 거래내역 조회 주기, 조회시간 등 세부 사항은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 ⑩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상 거래내역의 제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 ⑪ "은행"은 B2B 거래내역 보고서를 거래내역 조회일 익영업일까지 "고객"이 요청한 이메일, 팩스 또는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고객" 앞 제공하며, "고객"은 동 처리결과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한 B2B 거래 내역을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보관한다.
- ⑫ "고객"은 B2B 거래내역 조회와 관련하여 "은행" 앞 제공한 "B2B 거래은행"별 인터넷뱅킹 ID 는 "은행"이 B2B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하는데 동의한다. B2B 거래내역 조회서비스의 처리는 테스트 및 에러시의 조치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제 9 조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제 규정 및 거래약관과 "고객"이 지정한 "B2B 거래은행"의 전자금융약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이 지정한 "B2B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신청되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신청한 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3. "고객"이 요청한 "B2B 거래은행"의 B2B 거래가 해지되었거나, 전자결제수단, 전자결제수단상세내역 등 제 8 조에서 기술한 세부내역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4. "고객"이 "신청서"에 기술하여 "은행" 앞 제공한 "B2B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와 실제 해당 은행에 신청한 인터넷뱅킹 정보간의 차이로 "은행"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5.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B2B 거래내역 제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 5 호의 경우, 3 개월간 거래내역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장기 서비스 중단 상태임과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은행" 앞 별도 해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해당 B2B 거래에 대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 5 장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

제 10 조 (업무처리)

- ① "은행"은 제휴가상계좌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제휴가상계좌와 입금내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고객"은 은행이 제휴가상계좌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멀티뱅크서비스 이용신청서-B2B/제휴가상계좌 거래내역제공 서비스용" (이하 "신청서") 상 제휴가상계좌 거래내역이 관리되는 웹사이트(이하 "제휴사이트"라 한다)의 접속 정보(이용자 ID, 접속비밀번호)와 기타 필요정보를 기재하여 은행 앞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를 모두 "은행"에 전달한 이후 "은행"은 "고객"과 협의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은행"은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휴사이트"의 접속 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한편,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이 "은행"에 제공한 "제휴사이트" 접속 정보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7 일전에 "은행" 앞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통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본 서비스의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은행"이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제휴사이트"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접속 정보의 초기화 및 변경 등 "고객"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협조 하기로 한다.
- ⑤ 제휴가상계좌의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의 입금내역 조회 시간의 지정은 "제휴사이트" 서비스 가능 시간 중 "은행"의 영업시간 내에서 지정 가능하며, 거래내역 조회 주기, 조회시간 등 세부 사항은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 ⑥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상 거래내역의 제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휴일에 이은 첫 영업일에 처리한다.

- ⑦ "은행"은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보고서를 거래내역 조회일 익영업일까지 "고객"이 요청한 이메일, 팩스 또는 인터넷뱅킹 시스템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서 "고객" 앞 제공하며, "고객"은 동 처리결과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은행"은 본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한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을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보관한다.
- ⑧ "고객"은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조회와 관련하여 "은행" 앞 제공한 "제휴사이트"의 접속정보를 "은행"이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조회 서비스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하는데 동의한다..

제 11 조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제 규정 및 거래약관에 준하여 처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계좌에 대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1. "고객"의 "제휴사이트" 이용자 ID 가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경우
2. "고객"이 요청한 제휴가상계좌 거래가 해지된 경우
3. "고객"이 "신청서"에 기술하여 "은행" 앞 제공한 "제휴사이트" 접속 정보가 실제 "제휴사이트"에 등록된 접속 정보간의 차이로 "은행"이 본 서비스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각종 비밀번호 오류횟수 초과, 또는 기타의 사유로 6 개월간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제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기 제 4 호의 경우, 3 개월간 거래내역이 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장기 서비스 중단 상태임과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됨을 통지할 수 있고, 6 개월간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보 후 1 개월 이내에 "고객"이 "은행" 앞 별도 해지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에 대한 "본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제 6 장 공통업무

제 12 조 (입금모계좌의 자금인출)

- ① 제 3 조에서 지정한 입금모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은 집금 서비스를 제공한 익영업일에 인출하도록 한다.
- ② 단,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은행"이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 조 (통제 및 보안)

- ① "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출금계좌 및 입금모계좌의 관리와 운용은 본 계약에서 위임된 업무범위 내에 한하여만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하여 "은행"은 "고객"에게 제공되는 "본 서비스"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그 보안 및 통제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은행"에서 취급하는 출금계좌의 각 통장 및 해당인감의 보관 및 관리는 "고객"의 책임이다.

제 14 조 (수수료 및 조건)

- ① "은행"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요금은 처리수수료를 기본으로 하며, 입금모계좌 평잔 유지를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 ② 매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조건은 서비스 기간 1 개월당 아래와 같이 약정하며,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수수료율 및 계산방법은 "고객"과 "은행"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업 무 구 분	인터넷뱅킹 기반의 멀티뱅크서비스	핀뱅킹 기반의 멀티뱅크서비스
1) 입금대행	[원화] 고객별 : (최대 1 일 1 회) 계좌별 : 50,000 원 (최대 1 일 1 회) 건 별 : 5,000 원 [외화] 해당사항없음	[원화] 고객별 : (최대 1 일 2 회) 계좌별 : 30,000 원 (최대 1 일 2 회) 건 별 : 5,000 원 [외화] 계좌별 : 100,000 원
2)계좌 거래내역 제공	계좌별 : 10,000 원 (최대 1 일 1 회)	
3)B2B 거래내역 제공	고객별 : 300,000 원 (최대 1 일 1 회) 서비스별 : 50,000 원 (최대 1 일 1 회)	
4)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	고객별 : 300,000 원 (최대 1 일 1 회) 서비스별 : 50,000 원 (최대 1 일 1 회)	

“본 서비스”의 요금은 “고객”의 입금 건수, 금액, 입금모계좌 평잔 등에 따라 최초 계약 시 책정되며, “고객”과 “은행”은 서로 합의하여 본 서비스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수수료 납부)

- ① “고객”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당해 월의 총 수수료를 익월 10 일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은행”에 납부한다.
- ② 수수료는 “고객”이 “신청서”상 지정한 수수료계좌에서 별도의 자금청구 절차 없이 자동인출하며, “고객”은 총수수료를 출금일 전 영업일 까지 지정된 수수료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 ③ 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타은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거래 비용(집금대행 서비스시 인터넷뱅킹을 통한 당/타행 이체 수수료)은 본 서비스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객”과 타 은행간의 계약에 의해 부과된다.
- ④ “고객”이 “본 서비스” 관련 수수료를 수수료 납부일 까지 결제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본 서비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6 조 (면책)

“은행”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본 서비스” 제공의무 및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1. 폭동, 화재, 천재 및 기타 “은행”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기계고장, 회선장애 또는 파괴행위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이 발생하는 경우
2. “고객”과 “은행”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의 인터넷뱅킹, 펌뱅킹, 금융결제원 공동망 및 공인인증서상의 전산장애가 장시간 발생하여 “은행”이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4. “고객”이 지정한 출금은행/B2B 거래 은행/제휴사이트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거래화면 등이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은행”이 당일 중에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5. “고객”이 “은행” 앞 제공한 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펌뱅킹 정보가 “은행”의 책임없이 변경됨으로 인한 입금불능 또는 지연
6. 인터넷 뱅킹 기반의 멀티뱅크서비스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 4 조 제 2 항의 입금모계좌에 대하여 타행 인터넷뱅킹의 입금계좌 지정이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입금모계좌가 아닌 계좌에 대한 입금계좌 지정이 추가되어 입금모계좌 이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경우
7. 제 5 조, 제 7 조, 제 9 조 및 11 조(업무처리의 예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8. 제 4 조 제 15 항 및 제 6 조 제 13 항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9. "고객"과 "은행"은 간접, 우발 또는 특별손해 및 손실(기대이익의 상실 포함)에 대하여는 비록 손실이나 손해 가능성을 통지 받았을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7 조 (업무협조)

"은행"은 "본 서비스"를 원활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시 그 내용을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며, "본 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 18 조 (기밀유지)

"고객"과 "은행"은 정보교환 등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금내역, 타행계좌 거래내역, B2B 거래내역,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을 포함하여 본 서비스를 통해 "은행"이 취득한 정보
2. "은행" 앞 제공한 "고객"의 각행 인터넷뱅킹, 펌뱅킹, 타행 계좌 및 중요실물 정보
3. "본 서비스" 관련 "고객"이 취득한 "은행"의 업무흐름 및 내용 등

제 19 조 (계약의 존속기간 및 변경)

- ① 본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의 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고객" 또는 "은행"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의 존속기간은 1 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 또는 "은행"은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 또는 "은행"의 부도, 회생, 파산, 청산, 해산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고객" 또는 "은행"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제반조건을 위반하여, 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21 조 (계약의 해석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이외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시에는 본 계약서를 근거로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과 관련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22 조 (“고객”의 문서에 대한 신뢰)

- ① “은행”은 “고객”의 모든 지시는 “고객”이 적법하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고객”의 모든 지시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은행”에 제시한 서류상의 서명이나 인감 또는 서류 그 자체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에 찍힌 서명이나 인감을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고객”이 “은행”에 미리 신고한 서명이나 인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위조, 변조 또는 서명감이나 인감의 도용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고객”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은행”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은행”은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수권 받은 제 3 자가 “은행”에 제공한 모든 정보, 통신사항, 지시 및 요청 (총칭하여 “정보”라 함)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 등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고객”이 적법하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③ “고객”은 “은행”이 제 1 항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고객”의 지시 및 / 또는 정보 등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별도로 조사할 의무가 없음에 동의한다.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그러한 지시 및 정보 등을 신뢰하거나 그에 따라 취한 조치로부터 입은 손해 (단,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제외) 및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은행”의 청구 즉시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23 조 (책임)

- ① “은행”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은행” 또는 그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부당행위로 인하여 “고객”에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하여 “고객”에 배상한다. 단, 그와 같은 손실에 “고객”, 그 임직원 및/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은행”이 배상할 손실금액은 그 비율에 따라 줄어들며, “은행”이 “고객”의 지시를 따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에는 아무런 손실도 보상되지 아니한다. “은행”은 “은행” 임직원 및 그의 대리인이 행한 사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고객”은 여하한 상이한 점이나 자금 부족 및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은행”에 즉시 통지하며, 장부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대서한다.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수령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령한 거래내역 보고서를 점검하고, 예금 또는 인출이 이루어졌으나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출금계좌 또는 입금모계좌 거래내역 보고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예금 또는 인출에 관하여, 또는 거래내역 보고서 상에 나타난 자금의 입출금 중 “고객”에 속하지 아니하는 입출금 등을 발견한 경우 “은행”에 서면으로 즉시 알린다. 만약 “고객”이 이러한 통지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외에는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은행”은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서비스 범위에 한해 제한적인 대리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인정되며, “은행”의 권한 및 역할은 본 서비스 범위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고객"이 "은행" 앞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동 서비스 범위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 24 조 (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25 조(준거법)

본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26 조 (합의관할)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고객" 또는 "은행"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7 조 (계약의 변경)

- ① "고객"과 "은행"은 서면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1 개월 이상의 사전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은 아래 "계약의 해지"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동 기간 동안에 거래의 해지통지나 기타 이의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러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작성한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인터넷기반 집금대행' 및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펌뱅킹 기반 집금대행',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B2B/제휴가상계좌 거래내역 제공'상의 내용변경은 본 계약의 변경 없이 동 신청서양식의 '신청구분' 항목에 '변경'으로 작성하여 변경된 내용을 "을"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첨부서류

1. 인터넷뱅킹 기반의 집금 대행서비스

-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인터넷기반 집금대행 서비스용
- 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서
- 중요증서 인수(도)증

2. 펌뱅킹 기반의 집금 대행서비스

-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펌뱅킹 기반 집금대행 서비스용
- 출금계좌 비밀번호 확인서
- VAN 사 제출용 펌뱅킹 이용 신청서

3. B2B 거래내역 / 제휴가상계좌 입금내역 제공 서비스

- 멀티뱅크 서비스 이용 신청서 – B2B/제휴가상계좌 거래내역제공 서비스용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 통의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 년 월 일

""고객""

“은행”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지 점 장

지점
(인)